

강원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의원 입법 동향

- ◆ 강원도의회 제320회 정례회(6. 12. ~ 6. 23.)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제320회 정례회 조례안 처리 목록

◆ 총 건 : 의원발의 13건

상 임 위 원 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 회 의 처리결과 (2023. 6. 23.)
기획행정 위원회 (6)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영곤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영곤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기홍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미선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임미선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창수 의원	원안가결
사회문화 위원회 (3)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지영 의원	수정가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오섭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수 의원	원안가결
농림수산 위원회 (3)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기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윤순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지광천 의원	수정가결
안전건설 위원회 (1)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영 의원	원안가결

《참고 : 조례 제정 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320회 정례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3. 6. 23.(금)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 공포)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 요구 조례안의 확정)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조례의 효력 발생)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20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 : 심영곤 의원(의회운영위원장 · 국민의힘 · 삼척2)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시·군, 그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 : 심영곤 의원(의회운영위원장 · 국민의힘 · 삼척2)



현행 조례의 법령 및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직대통령”이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전직대통령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출생 또는 성장하여 대통령의 위업을 이룩한 사람을 말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추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념사업회가 전직대통령의 위업 발굴 및 전승에 관한 사업, 전직대통령에 대한 추모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전직대통령이 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 : 김기홍 의원(부의장 · 국민의힘 · 원주3)



출산장려와 행복한 가정만들기 시책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정비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 입양일 및 훈련소 퇴소식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 : 임미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다수인민원 등의 신속 · 공정한 조정 또는 해결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권익과 신뢰를 보호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한다. ②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하고, “다수인민원”이란 다섯 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고충민원을 말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충민원 · 다수인민원 등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권고 · 조정 · 시정권고 · 의견표명 ·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주민이 신청한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 · 처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이라 한다)가 고충민원 · 다수인민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또는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 평가, 민원사항 안내 ·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 발의 : 임미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 · 추진 및 변경 시 도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갈등 예방 ·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 추진,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공공갈등영향분석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도지사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도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 활용, 공공갈등관리 매뉴얼 작성·활용, 공공갈등관리 실태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한창수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횡성1)



현행 조례 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용어·표현 및 문장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임원을 공공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 이외의 임원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연봉액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며, 용어 등을 정비하였다.

▣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이지영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공동발의 : 김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2), 문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태백2), 박대현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화천), 양숙희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6), 원미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최규만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횡성2), 최재민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원주4), 최재석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동해1)

강원특별자치도 내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도 내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등으로 이송되는 도민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고, 도지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이지영 의원



김시성 의원



문관현 의원



박대현 의원



양숙희 의원



원미희 의원



최규만 의원



최재민 의원



최재석 의원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발의 : 심오섭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응원 활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한다. ② 서포터즈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참가국 선수들의 응원에 관한 활동 등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 활동기간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로 한다. ③ 서포터즈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②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서포터즈의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군,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김정수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철원1)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해설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장애인의 편의와 맞춤형관광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고,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려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문화관광지 견학 등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규정하였다.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홍성기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2)

■ 공동발의 :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고성), 강정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1), 박호균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엄운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윤길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영월2), 전찬성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8), 최종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2),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른 조례와 중복되거나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도민들의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와 중복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문,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당연히 적용되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문,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다.



홍성기 의원



김용복 의원



강정호 의원



박호균 의원



엄윤순 의원



윤길로 의원



전찬성 의원



최종수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 공동발의 :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고성), 강정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1),
박호균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원미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윤길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영월2), 전찬성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8),
최종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2), 홍성기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2)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의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조사료 전문단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정한 단지로 정의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조사료 전문단지를 운영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산지생태축산목장”을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수정하고, 법령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문 등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들을 삭제하였다.



엄윤순 의원



김용복 의원



강정호 의원



박호균 의원



원미희 의원



윤길로 의원



전찬성 의원



최종수 의원



홍성기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지광천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1)

■ 공동발의 :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림부산물”이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 ·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림부산물 수집 · 운반,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생산 · 판매,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 · 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②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광천 의원



엄윤순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이지영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취약계층의 재난안전 환경을 강화하고, 강원특별자치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두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 검토 결과 및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소방 · 가스 · 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과 생활안전환경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 ·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난에 대한 예보 · 경보 · 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삭제한다. ⑤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 제정 ·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용어 · 표현 및 문장을 정비하였다.